

명의로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(제37조의8 관련)

서비스 구분	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
1. 법 제32조의6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의로용방지서비스	가.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.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.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
2. 법 제32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	가.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.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다.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
3. 법 제32조의6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제한서비스	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